

변리사스쿨 8월 실전모의고사 정오표

【산업재산권법 이의신청 내용】

[29번] “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법원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단계에서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한 사유를 심리할 수 없다.”

해당 지문에 대한 해설에는 ‘판례노트209번 2015후1997’이라고 판례번호만 적혀 있는데, 판례에서는 “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외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,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” 라고 되어 있습니다.

해당 지문의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못 찾겠어서 질문 남깁니다.

답변) ①, ③ 복수정답 (기존 정답 ①)

③번 지문의 경우,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한 사유라면 법원이 이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.

해당 법리는 특허·상표·디자인보호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취지입니다.

따라서 ③번 역시 옳지 않은 지문에 해당하여 ①번과 ③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.

문항 검토 과정에서 혼선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.

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